

## 무형/지적자산의 화폐적 측정 상관행 비교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asuring Standards for Intangibles and Knowledge Assets on a Monetary Base

이 기 호\* · 설 성 수\*\*

#### 〈 目 次 〉

- |                           |              |
|---------------------------|--------------|
| I. 서 설                    | IV. 각 분야의 비교 |
| II. 회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      | V. 결 언       |
| III. 감정평가 및 가치평가의 무형자산 평가 |              |

#### <Abstract>

This paper is based on a belief that, it is the simplest and best way measuring intangibles and knowledge assets on a monetary base, although there are many efforts to measure it. We analysis and compare with accounting, appraisal and valuation standards on Korean, USA and global level each. We conclude that valuation is appropriate for intangibles and knowledge assets, but we should check the standards of valuation on a social base in Korea.

Key Words: Valuation, Appraisal, Accounting, Intangibles, Knowledge Asset, Value Accounting.

\* (사)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 사무처장, always21@dreamwiz.com

\*\* 한남대 경제학과 / 하이테크비즈니스학과 교수, s.s.seol@mail.hannam.ac.kr

## I. 서 론

### 1. 문제제기

현대경제에 있어서 지식자산의 역할은 점차 증대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지식자산의 측정과 보고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OECD(1998, 1999)는 국제적인 심포지움을 개최하거나 연구프로젝트를 강화한 바 있고, 미국 역시 이에 자극을 받아 대규모 연구(Lev, 2001)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OECD는 각국이 지적인 자산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경제학적인 지원을 받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지적 자산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사실 일부 선구적인 기업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업계에서도, 지식경영론의 고민과 같이, 이를 미래효익 창출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어떻게 축적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다. 또한 회계분야에서도 이를 적절히 측정·평가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분야나 가치평가분야는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경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모두 기술, 지적재산권, 지적자본, 혹은 지식자산과 같은 무형의 자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은 제조업형 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그 역할이 점차 증대

되리라 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과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의 고양과 적절한 가치평가는 이러한 자원의 창출활동과 사업화를 격려하여 지식기반사회로의 이동을 촉진시킨다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검토하는 여러 이론적인 갈래에서는 모두가 나름대로 무형의 자원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본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각 이론 모두 보다 정확한 측정수단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제시된 많은 지표들은 아직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있지 통일적인 지표는 되지 못하고 있다. 다양성과 창조성이 바탕이 되는 지적인 자원을 하나의 공통된 지표로 측정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을 화폐적인 형태로 측정하는 것은 어떠할까? 거래가 가능한 화폐적인 측정은 국가간 문화의 차이나 법률의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없고, 분야간 인식의 차이를 조정하고 감안할 필요가 없다. 다양하면서도 애매모호한 속성을 갖는 무형의 자원에 대한 측정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연구는 업계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화폐적인 측정수단과 방법을 검토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측정수단은 기업회계(corporate accounting)이다.<sup>1)</sup> 그러나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가치회계(value accounting)가 있다.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감정평가, 무형의 자원이나 비즈니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평가분야, 유가증권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유가증권관련 규정, 여러 자산의 조세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세관련 법에서는 여러 형태

1) 재무보고가 목적이 아닌 회계에서는, 일례로 관리회계에서는 전혀 다른 측정수단을 찾고자 한다.

의 지적인 자원에 대한 가치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sup>2)</sup>

그런데, 이들은 어느 하나만 보더라도 해당 분야 내에서 기본원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데다 각국의 고유한 법과 관행이 반영된다. 각 국가별로 해당 분야의 회계를 위한 기준이 제정되고, 국가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기준이 제정된다. 가치회계에서의 국제적인 기준은 대체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나치게 각국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는 법규 관련 가치회계는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용성을 갖는 회계기준, 감정평가기준 및 가치평가 기준을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 회계에서의 무형자산의 측정과 보고를 살펴보고, 이어 감정평가분야와 가치평가분야의 무형자산의 측정 문제를 검토한다. 이어 지적인 자산의 측정에 특화하여 제정된 한국의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을 검토한다. 이어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자산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은 가치회계 전체에 대해 동시 검토가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여러 국가의 국가별 회계제도의 차이는 (H gh-Krohn & Joachim, 2000)에서 검토된 바 있고, 주요 국가의 무형의 자원에 대한 회계제도는 OECD(1999)에서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와 가치평가까지가 동시에 검토된 연구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 2. 개념정의

본고는 어느 한 학문 범주 안에서의 논점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 혹은 여러 상이한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다루는 관계라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되어야 할 용어 중 대표적인 것이 무형자산, 지식자산, 지적자본 등과 관련된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가치평가와 감정평가이다.

### 1) 무형자산, 지식자산, 지적자본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회계관련 문헌에서 쓰이는 용어이며, 지식자산(Knowledge assets)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은 경영 및 법령에서 활용되는 용어이다. 특히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용어는 특허, 상표, 혹은 저작권 같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을 언급한다. 그러나 모두 미래의 효익을 가져오는 물리적 형상을 갖지 않는 재산권(자산)을 의미한다” (Lev, 2001).

이제 이러한 자산들의 관계를 살펴보자. 기업의 자산은 크게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무형자산은 기술형, 정보처리형, 엔지니어링형, 저작권형, 마케팅형, 인적자본형, 고객형, 계약형, 영업권형 및 위치형으로 구분된다 (설성수, 2000나).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종류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우므로 이들을 다시 기술형과 지적활동형, 조직형 및 순수 무형으로 <표 1>과 같이 간단히 구분할

2) 여기에서 언급되는 가치회계라는 개념은 가치평가분야에서 이제 막 사회적 회계(social accounting)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환경회계에서도 사회적 회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두 개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겨레나 실제 지불을 전제로 한 가치측정은 보다 정확한 의미인 가치회계라 명명하였다. 용어의 혼란을 막아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표 1〉 무형의 자산 구분

	구분 형태	세부 자산
기술형	산업재산권형, 엔지니어링형, 정보처리형, 인적자본형	산업재산권, 노하우, S/W 등
지적활동형	저작권형	저술, 건축, 미술, 영상프로그램
조직형	비즈모델형, 마케팅형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
순수 무형	계약형, 영업권형, 위치형, 고객형	계약, 권리, 위치, 고객, 위치 등

수 있다.

기술형은 산업재산권형, 엔지니어링형, 정보처리형, 인적자본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다. 지적활동형은 저작권형이라 할 수도 있는데 지적활동의 산물을 지칭한다. 조직형은 인적, 지적, 조직적 자원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비즈니스모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순수 무형은 법적, 권리적, 위치나 고객 등 지적 혹은 조직적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무형의 자원이라 할 것이다.

설성수의(2002)는 기술 자체가 유형에서 부호형을 거쳐 이제 무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이 인적자본이나 조직자본과 결합되어 비즈니스모델과 같이 사업이나 기업 그 자체와 분리할 수 없는 현상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다 보니 기술과 무형자산, 지식자산, 지적자본들이 보는 시각이 어느 쪽이나에 따라 비즈니스와 동일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전체를 보려하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는 분명 개념이 모호하다하여 배격될 사항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 자산이 이제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분야의 공통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어떻든 본고에서는 회계상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무형자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술이나 지식자산 혹은 지적자산이라는 용어 역시 해당분야

의 관례를 따르며 사용되어야 할 곳에서는 그대로 사용한다. 또 공통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무형의 자원(Intangibles or Intangible Resource) 혹은 지적인 자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감정평가와 가치평가

가치평가와 감정평가라는 용어는 혼동을 주기에 용어정리부터 필요하다. 미국 가치분석사협회의 주요 교재(Green et al., 2000)는 감정평가(Appraisal)란 예술품, 동산, 부동산 및 기계설비, 골동품, 보석 등과 같은 분리 가능하고, 실체가 있는 개별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이며, 가치평가(Valuation)란 이들 각 자산이 결합되거나 혹은 이들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나 사업의 가치평가를 지칭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특정한 개별사업 혹은 기업조직 전체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미하는 기업가치평가(Business Valuation)는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부분과 그것을 포함한 그 이상으로 구성된다.

한편 가치평가의 주 대상인 기술이나 무형자산은 감정평가의 대상과 달리 무형의 자원이다. 그에 따라 이의 가치평가는 유형의 감정평가와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형자산은 개별자산으로 구분 가능한 것도 있으나, 다수는 운영되고 있는 기업과 구분 곤란하고 기업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는 유형자산의 감정평가와 동등한 수준의 독

립된 기준으로 설정되거나, 기업가치평가의 범주에서 다루어진다. 각 국에서는 기업가치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론적으로는 감정평가나 가치평가가 큰 차이가 없으나 업계에서는 이 구분을 대단히 강조한다. 기업 가치나 무형자산의 가치를 언급하는 가치평가업체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업계에서도 이 사항만은 감정평가가 아닌 가치평가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론적인 논의보다 업계의 관행비교를 다루는 본 논

문도 이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 II. 회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

### 1. 무형자산 범주

각 회계기준의 무형자산 인식은 일단 다르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범주 및 인식은 <표 2> 및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이다.

<표 2> 각 회계기준의 무형자산 범주

한 국	미 국	국 제
-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저작권 광업권/어업권/임차권리금 - 개발비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영업권 특허/상표 저작권 - - - 프랜차이즈/계약/고객 소프트웨어	외부취득 영업권 특허/상표 저작권 - 창업비 R&D 광고비/교육훈련비 소프트웨어

<표 3> 각 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의 인식 및 평가방법

구 분	한 국	국 제	미 국	
인 식	정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기업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존재하거나, 그 이용가능성이 입증되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영업권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내부로부터 창출된 영업권은 포함 안함.	내·외부 영업권을 모두 포함
	개발비	취득원가를 상각	R&D 비용이 자산인식 준거를 충족하면 자본화하고 상각함.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제외한 R&D비용은 자산인식 안됨.
평가방법	취득원가를 상각	취득원가를 상각	취득원가 상각이 기본	
유효수명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 못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 못함.	제도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하나, 40년을 초과하지 못함.	
대안적 처리		관련 시장이 있을 경우 공정가액 평가 허용	공정가액 평가를 허용	

국내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을 유동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한다. 고정자산은 다시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어업권, 임차권리금, 개발비로 구분된다. 따라서 조직형, 순수 무형, 지적활동형 등 유상으로 취득하지 않은 어떠한 형태도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에서 무형자산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임대 또는 기타 관리상 목적으로 기업에 의하여 통제되고 1년 이상 이용되리라고 예상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되며, 광고비, 교육훈련비, R&D투자 및 창업비가 포함된다<sup>3)</sup>. 또 기업의 인수·합병시에는, 식별 가능한 자산금액 이상의 초과지분을 영업권으로 규정하며 이는 자산으로서 인식된다<sup>4)</sup>.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sup>5)</sup>에서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으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정의하며, 상표, 프랜차이즈, 특허, 기업명, 비경쟁계약, 고객명단, 저작권 및 영업권을 포함한다<sup>6)</sup>.

각 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 인식의 특이사항은 내부개발 영업권과 R&D 투자에 관한 것이다. 『국제회

계기준』 및 한국에서는 내부개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나, 미국은 식별가능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또 R&D와 관련된 투자를 한국과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으로 인식하나, 미국은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다.

## 2. 무형자산 평가

회계상의 무형자산 평가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금액으로 정의하며, 이를 유효수명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에서는 대안적 평가방법으로서 공정가액<sup>7)</sup>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평가를 위한 연간감손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무형자산의 인식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국제적인 회계관행은 R&D로부터 발생한 무형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H gh-Krohn and Joachim, 2000).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1971년에 “R&D 원가와 후속 매출 및 이익 혹은 점유율로 측정되는 미래효익 증대의 명백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하고, 공개기업의 재무제표에서 R&D 지출을 모두 비용처리 할 것을 지시하였다<sup>9)</sup>. 하지만 R&D투자가 주가 및 주기수익과 상관관계가

3) IAS 38, “Intangible Assets”.

4) IAS 22, “Business Combination”.

5) 미국의 경우 국가기구에 의해 제정된 단일한 기업회계기준을 갖지 않으며,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및 미국회계사회(AICPA)에서 발표된 여러 규정, 재판정에서의 판례 및 해석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서 명하고 준수한다.

6) APB(Accounting Principle Board) No. 17. “Intangible Assets”.

7) 가치평가업계 및 일반회계에서는 공정가치 또는 정상가치라는 용어가 일반적이거나, 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액으로 언급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뒤에서 상술한다.

8) IAS 36, “Impairment of Assets”.

9) SFAS No. 2(1971). 다만 최근 Software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1985).

있다는 연구<sup>10)</sup>와, 투자자가 각 기업의 R&D투자실적을 투자에 반영한다는 실증연구<sup>11)</sup> 결과로 볼 때, 지식 자산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왜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받아 온 회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회계는 일반적으로 '경영실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인식·측정하여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정보시스템'으로 정의된다(김진호, 2000). 그러나 재무보고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 미래의 기대효익을 반영하기보다는 그 대상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회계관행 때문에 기업의 현재가치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sup>12)</sup>. 회계정보는 목적적합성(relevance)와 신뢰성(reliability) 중 후자를 좀 더 중시하는 보수주의 관행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무형자산 및 시세변동이 심한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 이것은 기업의 시장주가와 장부가치가 차이를 보이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 3. 한계 극복 노력

회계분야에서도 무형의 자원측정에 있어서의 한계 혹은 목적적합성을 확대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

어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기준 확장형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재 회계에서 적용되는 무형자산의 인식 및 평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 가치도 현행 취득원가뿐만 아니라 대안적 처리로서의 공정가액 적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 무형의 자원이 발생당기에 자산인식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차기에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이미 비용 처리한 원가를 자산으로 재정산하고 상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이다<sup>13)</sup>. 이 때 무형의 자원에 대한 자산인식 곤란 및 미래의 경제적 효익 발생여부에 대한 확인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감손심사를 일상화하고 주식에 무형자산의 자산인식 범주를 공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 당기에는 비용 처리할지라도 차기에 자산인식이 가능한 대상을 공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자산의 심사를 정례화하고 재무제표를 개정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잇점을 가져 그 효용성은 크지만, 과도한 노력과 비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기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별도의 공시기준을 만들려는 노력이다. 많은 기업 및 연구자, 그리고 회계관련 컨설팅사는 현행 재무보고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회계기준의 근본적인 속성 때문이라

10) 이에 관하여는 지난 수십년 동안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계관행이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무형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회계보고의 목적적합성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연구(Lev and Zarowin, 1999, Lev and Sougiannis, 1996, Chambers et al., 1998)와, 특히 R&D 투자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관행이 추가설명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연구(Deng and Lev, 1998, Lev and Sougiannis, 1996, Aboody and Lev, 1998)가 있다.

11) Eccles, et. al.(2001) 및 Lev(2001) 참조.

12) 물론 유가증권 및 채권 등, 일부의 자산 및 부채를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일부 자산의 경우 공정가액을 대안적으로 채택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취득원가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13)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의 GAAP에서는 이미 비용 처리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시장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재평가하고 자본화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들은 공시되는 재무자료와는 별개로 비재무적 성과 및 지식·무형자산을 공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스웨덴 스칸디아사의 지식자산 공시가 가장 대표적이며 현재 미국기업의 약 60%가 재무자료 이외의 비재무자료를 공시한다 (Eccles et. al., 2001). 대표적인 공시방법은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Kaplan & Norton, 1994), Scandia Navigator (Sveiby, 1998) 및 지식자산성과표(Knowledge Capital Scoreboard; Lev, 1997)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도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인정 가능한 공시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사회적인 기준으로 확립되기에 필요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아직 기업간 비교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단일기업 내부의 시계열적 비교만이 가능한 것도 단점이다. 또한 투자에 보조적으로 적용되나 화폐가치로 환산되지 못한 지표이다.

이러한 대안들이 화폐가치로 환산되지 못한다는 점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가치를 평가하여 보고하자는 대안이 등장한다. 화폐적인 형태로 측정 보고하자는 움직임은 크게 보아 가치회계 대안형이라 부를 수도 있다. 가치평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기에 이론적인 고민이 필요없고, 화폐적인 측정이라는 만국 공통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도 편리하다. 또한 가치평가는 어떠한 상황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회계분야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으므로 엄격히 보면 회계 내에서의 대안은 둘이라 할 것이다.

### Ⅲ. 감정평가 및 가치평가의 무형자산 평가

무형자산의 확대와 이에 대한 회계처리의 한계는 가치평가 분야의 확대와 연결되었다. 그런데 가치평가 분야의 확대는 정확히 보면 두 흐름에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산구성 측면에서는 지적자산을 중심으로 무형자산이 확대된다는 추세가 있는 반면, 자산의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는 다른 추세도 있다. 지적자산의 확대에 따른 재무보고의 문제는 대체로 국내의 문제이고, 국가간 차이는 국제적인 문제이나, 두 추세는 거의 같이 얽혀서 진행되고 있다.

#### 1. 감정평가

##### 1) 『국제가치평가기준』의 무형자산 평가

1970년대 이후 국제적인 투자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각 국의 가치평가기관 사이의 규정차이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sup>14)</sup> (IVSC; The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mmittee)는 1981년 국제자산가치평가기준위원회(The International Assets Valuation Standards Committee)로 출범하여 1994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 기구는 공익을 위한 재산권 가치평가기준의 고안 및 제정, 동 기준의 세계적인 보급촉진, 제 국가 기준들간의 적용상의 차이를 식별하고 공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 기구는 1985년 『국제가치평가기준 (IVS;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을 제정하였다. 국제

14) 2000년 7월 현재 35개 국가협회 및 11개국 참관인 단체, 그리고 3개국 주재원 단체가 참여함.



가치평가기준의 주요한 목적은 첫째,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위하고, 둘째, 전 세계 가치평가사를 위한 전문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신흥산업국 및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가치평가기준 및 재무보고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가치평가기준은 1994년과 1997년, 2000년 및 2001년에 개정되었으며, 추세로는 전통적인 감정평가 영역에서부터 비즈니스나 무형자산 가치평가를 포함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국제가치평가기준』은 가치평가 규범, 재산권 유형, 가치유형 등의 기본적인 부분과 기준, 적용원칙 및 지침의 적용 관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재산유형을 부동산, 동산, 비즈니스, 금융증서로 구분하는데, 금융증서는 부동산 관련 금융증서를 지칭한다. 유형자산의 감정평가에서 출발한 『국제가치평가기준』에서 무형자산은 아직 재산권 유형에 포함되지 못하고, 지침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가치평가(1~3호)와는 별개의 지침(4호)으로 다루

고 있는 한편 기업가치평가지침(6호)에서는 무형자산 평가가 기업가치평가의 주요한 요소로 언급된다.

『국제가치평가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무형자산은 영업권, 다양한 법적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계약증서 등이다.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역시 시장가치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가치평가 방법론은 다른 자산의 그것과 같다.

국제기준은 무형자산 가치평가의 용도를 기업 또는 그 일부의 취득 및 처분, 합병, 무형자산의 매각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표 4>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비용접근법, 소득접근법, 시장사례접근법을 기본적인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이 접근법들을 모두 적용하라고 명시한다. 이 지침에서 특이한 것은 소득접근법을 사용할 때 추정된 소득은 일반적으로 모든 무형자산에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sup>15)</sup>.

〈표 4〉 『국제가치평가기준』의 무형자산 가치평가지 고려요인

- 소유지분에 부수된 권리, 특권 또는 조건
- 무형자산의 잔존 경제적 수명 및 법률적 수명
- 무형자산의 수익력
- 무형자산의 성질 및 무형자산의 역사
- 정치전망 및 정부정책을 포함한 대상 무형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전망, 환율, 물가상승률, 이자율과 같은 요인
- 대상 무형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산업의 여건 및 전망
- “영업권”이라고 칭해지는 무차별자산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무형자산의 가치
- 대상 무형자산 소유 지분권의 이전 거래
- 다른 시장자료, 즉 대체투자의 수익률 등
- 유사한 무형자산 지분 또는 무형자산의 취득시의 시장가격
- 무형자산의 경제적 역량 및 전망을 추정하기 위한 과거 재무제표의 조정
- 가치평가가사가 적절하다고 믿는 기타 정보 등

15) 다만 개별자산에 배분된 소득이 모든 자산소득의 합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미국 『통일감정평가기준』

미국은 정부가 정한 기준만 충족시킨다면 어떠한 민간기구의 활동도 용인된다. 유형자산을 다루는 감정평가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감정평가기구만 해도 대표적으로 감정평가사협회(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농업감정평가사협회(American Society of Farm Managers & Rural Appraisers), 평가전문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권리평가협회(International Right of Way Association), 독립평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Fee Appraisers), 숙련평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ster Appraisers) 등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전통 및 기준으로 운영되어 통일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7년 이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설립된 감정평가재단(Appraisal Institute)에 의해 통일된 감정평가기준이 제정되었다. 『통일감정평가기준(USPAP;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은 1989년 FIRREA법에 의해 인

정되고, 1993년 예산실(OMB)에서 승인된 국가기준이다.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되어, 현재 2000년 1월 1일 판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 『통일감정평가기준』은 서문 및 행위규범으로 구성된 개요와 10개의 기준, 9개의 기준진술, 19개의 적용의견 및 용어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유형자산의 감정평가와는 명확히 구분한다. 그러나 기업가치평가와 동일한 범주에서 다루어,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별도의 규정으로 나누거나 기업가치평가 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sup>16)</sup> 특히 기업가치평가를 무형자산가치평가사와 같은 전문가가 취급하도록 기술한다<sup>17)</sup>.

미국 『통일감정평가기준』은 부동산의 감정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1997-1998년에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근본적인 수정이 제안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정평가재단의 주요한 구성원인 감정평가사협회(ASA;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는 별도의 기업가치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기업가치평

〈표 5〉 『통일감정평가기준』에서의 무형자산 평가시 고려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고객이나 의도된 사용자 혹은 평가결과의 의도된 사용</li> <li>b. 임무의 목적이나 사용될 가치개념</li> <li>c. 유효일자</li> <li>d. 평가될 비즈니스, 매매계약, 주식이용 제한, 파트너십이나 통제권 등</li> <li>e. 작업범위</li> <li>f. 특별한 가정</li> <li>g. 가상조건 등</li> </ul> |
|---|

16) Standard 9, Business Appraisal, developing

“In developing a business or intangible asset appraisal, an appraiser must identify the problem to be solved and the scope of work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and correctly complete the research and analysis steps necessary to produce a credible appraisal.”

17) “In developing a business or intangible asset appraisal, an appraiser must identify the problem to be solved and the scope of work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and correctly complete the research and analysis steps necessary to produce a credible appraisal.” (Standard 9, Business Appraisal, developing)

가에 관한 내부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유형의 감정평가에서 무형의 가치평가와 기업가치평가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사용되는 방법론은 『국제가치평가기준』이나 미국의 『통일감정평가기준』 모두 소득접근법, 비용접근법 및 시장사례접근법이라는 기본적인 세 접근법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론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로, 기준규정 9-2에서는 비즈니스나 무형자산 평가에 있어서 평가사가 식별해야하는 내용으로 <표 6>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준규정 9-3에서는 비즈니스나 무형자산 평가에 있어서 평가사는 기업의 전부나 부분 청산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가능성을 조사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준규정 9-4에서는 분석에 포함시킬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3) 한국의 『감정평가규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의 부속규정인 『감정평가규칙』도 감정평가의 기본원리 등에서는 국제적인 것들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이 규칙에

서는 국제기준이나 미국의 통일 기준과 달리 여러 접근방법의 적용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차이와 무형의 자산이 앞서 언급한 무형자산의 유형 중 기술형 일부와 순수 무형에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무형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제28조(어업권의 평가) 및 제29조(기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에 규정하고 있다.

어업권의 평가는 어장 전체에 대한 수익환원법(소득접근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에서 당해 사업의 적정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소요액을 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시장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 또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전용측선이용권, 기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행하거나 영업권의 평가에 포함하여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가 가능한 가입전화사용권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가입전화사용권의 평가는 신규취득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6〉 『통일감정평가기준』의 기업가치평가지 포함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비즈니스의 성격과 역사</li> <li>b. 기업, 그 산업,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금융, 경제조건</li> <li>c. 기업의 과거 및 현재 실적 및 전망</li> <li>d. 주식이나 지분의 과거 거래</li> <li>e. 유사 비즈니스의 거래</li> <li>f. 유사한 비즈니스에 대한 가격 조건</li> <li>g. 무형자산의 경제적 이득 등</li> </ul> |
|--|

## 2. 가치평가

### 1) 미국가치분석사협회의 『전문가기준』

1990년 공인회계사와 기타 경영전문가들이 설립한 가치분석사협회(NACVA; 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sup>18)</sup>는 기업가치평가 전문가 집단이다. 현재 회원은 약 5,000명으로 미국 내에 가장 많은 기업가치평가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기구는 2000년부터 호주, 홍콩, 영국, 한국<sup>19)</sup> 등과 함께 국제평가사/컨설턴트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ultants, Valuers and Analysts)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가치평가의 통일과 이를 통한 국제적인 투자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의 기업가치평가기준(Professional Standards)은 크게 서문, 일반기준, 평가기준, 보고기준, 기타 관련 지침 및 요건의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준은 무형자산 및 기업가치평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기준 자체가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므로 비즈니스의 대상이라면 모두 이 기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관련법규 및 다른 기준과의 관계를 별도로 명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회계사 집단에서 출발한 것을 반영하여 미국 공인회계사회(AICPA)의 전문가윤리규정 및 컨설팅서비스기준준칙의 준수를 명기하고 있으며, 노동부 및 국세청 규정, 그리고 연방 및 주법, 미국 『통일감정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각각의 적용·준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타 규정과 마찰을 피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는 회계사 집단에서 파생된 기구의 기준이라는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며, 회계와 구분되는

가치평가의 원리와 가장 일반적인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국제가치평가기준이나 미국 통일 감정평가기준과 달리 아주 세부적인 기법이라 불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 2)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

2000년 7월 사)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의 제안에 의해 구성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은 무형자산 및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평가기준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는 기술 및 기술에 기반한 기업의 가치평가에 초점을 맞춘 기준으로서, 기존의 기업회계 관련 제규정 및 감정평가관련 제규정이 유형자산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차이가 난다. 또한 유가증권관련 제법규에서 규정되고 있는 증권 및 금융관련 자산의 평가와도 일반 기술 및 지식자산 일반을 취급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이 기준은 다른 가치평가기준과 같이 가치평가의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준칙이나 지침을 갖고 있다. 준칙은 기술가치평가, 벤처기업가치평가 및 기술기업가치평가 등 대상의 차이에 따라 존재한다. 지침은 설명적인 내용이며, 모든 평가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기준은 특히 기술과 같은 지적인 자원의 가치평가에 초점을 둔 가치평가기준이라 평가대상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기술, 벤처기업 및 기술기업이라는 단계를 반영하여 준칙과 지침이 구분된다. 기

18) 2000년에 CPA 이외의 전문가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19) 한국의 기술가치평가협회가 참여.

술에서도 개발계획서, 개발중 및 완성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벤처기업도 매출전 벤처기업, 매출 벤처기업 및 이익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가치평가에 있어 각 단계별 특성이 구분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기준 역시 가치평가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방법론이 상당부분 국제가치평가기준이나 미국 가치분석사협회의 기준과 호환된다. 이 기준 자체가 국내에서의 분야별(과학기술계, 금융계 등) 혹은 업종별 호환성을 전제하고 있고, 국제적인 호환성을 전제하고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설성수, 2001). 또한 개별기술이나 지적인 자원의 가치평가에 대해 다른 어떠한 가치평가기준보다 세밀한 지적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 IV. 각 분야 비교

### 1. 회계와 가치평가의 비교

회계와 가치평가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GAVP; Generally Accepted Valuation Principle)을 통해 비교하면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20)</sup>

회계는 과거 기록을 중시하고 가치평가는 미래소득을 중시한다. 또한 회계는 신뢰성을 중시하고 가치평가는 목적적합성을 더 중시한다. 회계는 평가하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으나 가치평가는 여러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가치대안(가치지표)을 모두 도출하도록 한 후 가치를 조정한다. 또한 가치평가는 용도, 대상, 시점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회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가치평가란 대단히 다양한 가치의 객관화 작업이기에 주관적인 요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회계와 가치평가가 전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다르다. 여기서는 양 분야에서 사용하는 가치개념과 여러 평가방법의 적용이라는 문제만을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자.

<표 7> 회계기준과 가치평가기준의 차이

구분	회 계 기 준	가 치 평 가 기 준
종 류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미GAAP(SFAS, APB 등)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 국제가치평가기준, 미국 통일감정평가기준 원칙
원 칙	- 과거기록중시 (역사적 회계원칙) - 신뢰성중시 (보수주의 회계관행) - 단일한 평가방법적용 - 특수상황 아니면 가치차이 불인정	- 미래소득 중시 / 시장사례 중시 - 목적적합성중시 - 복수의 접근방법 적용 - 용도/목적/대상/시점 차이 인정
평가방법	취득원가	미래효익에 대한 평가
용 도	재무보고	투자, M&A, 합작, 여신, 보증, 파세, 소송 등
가치개념	취득원가/공정가치	시장가치(정상시장가치)
단 점	기업의 실제 가치평가 곤란	결론의 객관성미흡

20)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원칙'이라는 용어가 익숙지 않아 그러한 용어의 사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그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겠지만 그러한 원칙은 분명 존재한다.

## 1) 원가와 가치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취득원가이며 대안적 개념으로 공정가액(Fair Value)<sup>21)</sup>을 들 수 있다. 즉, 회계에서 자산의 가치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수치로서 표시되며, 이 값이 시장의 가격과 크게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 장부가액이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 한하여 공정가액을 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공정가액의 개념은 가치평가에서 사용하는 시장가치 개념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치평가업계에서는 회계에서 상징하는 공정가액 개념과 시장가치는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가치평가기준』에는 시장가치(Market Value)라는 개념과 정상가치(Fair Value)라는 개념은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호환가능하나, 가치평가에서는 두 개념이 차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22)</sup>. 미국 『통일감정평가기준』 역시 정상가치는 회계개념이고 시장가치는 가치평가개념이라고 명시한다. 한국의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은 또한 Fair Value라는 의미는 공정한 가치라는 의미보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라는 의미이므로 정상가치로 번역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제회계기준』 및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액”으로, 미국 GAAP에서는 “한 자산(부채)이 강제되거나 혹은

청산적 판매가 아닌, 자발적 거래의사를 가진 당사자간의 구입(발생)할 수 있는 혹은 판매(상환)할 수 있는 금액<sup>23)</sup>”으로 기술된다. 반면에 『국제가치평가기준』이나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에서 언급하는 시장가치는 “적절한 마케팅이 이루어진 후, 한 재화에 대한 가치평가일 현재의, 개인적 이해 관계가 없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추정교환가격이며, 여기서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지식이 있고, 사려 깊으며,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sup>24)</sup>라고 기술한다. 이렇게 정상가치는 시장가치에 비해 적절한 마케팅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당사자의 관련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전제하지 않는다. 즉 시장가치는 교환에 초점을 둔 개념이며, 정상가치는 사용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 실제 평가가액의 결정에서 시장가치는 해당자산의 시장성 결여여부가 매우 중요한 할인요소이나, 공정가액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가치평가에서 시장가치 개념에 입각한 가치평가를 시장가치 기반 평가, 줄여서 시장가치평가라 한다. 그리고 특수가치, 사용가치, 청산가치 등의 시장가치가 아닌 비시장가치에 입각한 가치평가를 비시장가치평가라 한다. 그리고 모든 가치평가기준은 가치평가가 비시장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을 경우는 그러한 사실과 시장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시장가치가 중요한가. 시장은 완전하지 않지만 시장에 기반하여,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21) Fair value를 한국 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액, 법에서는 공정가치, 정상가액, 정상가치라 부르고, 가치평가기준에서는 정상가치로 번역한다. 그런데 fair value란 결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 즉, 공정가치란 의미가 아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치란 의미이다.

22) IVSC(2000), General Valuation Concepts and Principles, 8.1.

23) FASB, Statement No. 107 및 133.

24) General Valuation Concepts and Principles, 5.2. 또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 2000, 가치평가기준, 10 시장가치개념 등.

결정하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치라 보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는 이해관계가 없고,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적절한 지식, 적절한 마케팅 기간의 부여야말로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치라 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장가치는 최고최선의 원칙(highest and best)과 최다빈도의 원칙(most likely)에 의해 계산된다. 수요자 측에서는 욕망과 구매력, 공급자 측에서는 회소성과 효용이 바탕이 되어 결정되는 가격 중 최고 최선의 사용을 전제로 한 가격, 혹은 여러 사람에 의해 가장 빈도가 높게 형성되는 가격을 시장가치라 보는 것이다.

## 2) 여러 접근방법의 적용과 가치조정

가치평가의 핵심원리 중의 하나가 여러 접근방법의 적용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개념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평가 방법은 시장사례접근법과 소득접근법 및 비용접근법이다. 시장사례접근법(market approach)은 비교 가능한 사례를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접근법이고, 소득접근법(income approach)은 해당 자산이 벌어들일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비용접근법(cost approach)은 투입된 비용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접근법이다. 이들은 다시 사용하는 세부 개념이나 원리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크게 구분되는 세 방식을 보통 방법론이나 접근법이라 하고 그 하부에 있는 여러 방법들을 기법이라 부른다.

여기서 여러 접근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은 사용가능한 기본적인 접근법을 모두 사용하라는 것이고, 그 하부에 있는 세부 기법들도 사용 가능한 것은 모두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이 원칙 역시 그 정신은 간단하다. 가치는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기에 주관적으로 도출 가능한 모든 수치를 고려하여 최종 가치결론을 도출하라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 기법의 적용은 최종 가치판단을 위한 여러 수치, 즉 가치지표(value index)를 도출시킨다. 따라서 이들을 바탕으로 최종 가치결론(conclusion of value)을 도출하는 가치조정(reconciliation of value)이 이루어진다.

만약 가치평가에서 회계와 같이 단일 방법이 적용되고 여러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그러한 결과는 가치평가의 결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일례로 동일 시점에서 동일한 기술을 놓고 평가해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느끼는 가치는 다르다. 심지어 양측에 고용된 가치평가 전문가들도 사는 측과 파는 측에 따라 가치결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sup>25)</sup> 그러기에 사는 측이 느낄 수 있는 가치, 파는 측이 느끼는 가치, 중간자가 느끼는 가치, 유사한 사례에서 나타난 가치 등을 모두 나열해 놓고 가장 적합한 값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회계에서는 누가 해도 동일한 값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 2. 감정평가 및 가치평가 비교

감정평가와 가치평가가 엄밀한 용어상 차이는 있지만 사용하는 기본적인 원리나 원칙은 대단히 유사하다. 다만 출발한 뿌리가 달라 대상으로 하는 자산의 내용이 약간씩 다르고, 그에 따라 그 분야의 일반적인 상관관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국제가치평가기준은 감정평가 영역에서부터 출발

25) 결과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같은 사항에 대해 원고측과 피고측 변호사의 판단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그러기에 법정이 필요한 것이고, 가치평가 분야에서도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가치평가사가 필요하다.

해 비즈니스 가치평가까지 확대해 오고 있다. 다루는 영역이 국제기구라는 점을 따라 대단히 신축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인 호환성을 대단히 중시한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영역은 부동산 관련부분을 제외한다면 이들과는 무관하다. 미국의 통일 감정평가기준도 국제기준과 거의 유사하다.

미국 가치분석사협회의 기준은 이 기구가 회계사들에 의해 출발된 것이라 비즈니스활동과 기업가치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집합된 자산 혹은 비즈니스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자산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 비즈니스의 대상은 모두 평가대상인 것이다.

한편 한국의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은 기술과 지적자산을 중시하고, 무형자산이 비즈니스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가치평가기준이다. 이 기준은 지적자산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기준이라 할 것이다. 이 기준은 기술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치결론이 특징적이다. 다른 기준이 하나의 확정된 수치로써의 가치의견을 권장하는 데 반해, 이 기준은 주어진 가정과 조건에서 추정된 가치라는 의미인 가치추정치를 권장한다. 한편, 가치추정치도 하나의 수치가 아니라 수치의 범주로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이나 무형자산의 가

치평가는 이미 비즈니스로서 확립된 기업의 가치평가보다 평가오차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V. 결 언

기술 및 지식자산의 측정에서 여러 이론과 기법들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지만 모든 형태의 무형 혹은 지식자산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폐적인 측정이 무형의 지적자원을 측정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국제적인 호환성이 큰 수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자산의 측정과 보고와 관련된 업계의 실제 업무 지침을 비교한 것이다. 화폐적인 측정은 이론적인 차이나 국가간 혹은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할 필요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검토의 과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지식자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

검토된 내용은 회계와 감정평가 및 가치평가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미국의 기준 및 한국의 기준들이다. 본고의 검토결과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8〉 각 가치평가기준의 비교

	IVSC(2000)	USPAP(2000)	NACVA(2000)	기술기준(2000)
공통	개념, 행위규범, 기준, 지침			
대상	부동산, 동산, 비즈니스, 금융자산	부동산, 동산, 비즈니스, 무형자산	비즈니스	기술, 무형자산, 비즈니스
기반	국제회계기준		GAAP 및 제법규	회계기준 및 제법규
특징	- 재무용/대출용구분 - 금융자산은 부동산 기반	- 감정평가형	- 국세청(IRS) 규정, 회계기준 의존 큼	- 기술가치평가 지침 존재
구분	자산별	자산별 (업종별)	(업종별)	(업종별)

자료: 설성수(2001) 수정



첫째, 가치회계의 전부가 할 수 있었던 기업회계가 무형의 자원이 증가하는 변화추세를 잘 반영하지 못해, 즉 인식과 측정에서 문제가 있고 목적적합성에 문제가 있어서 기업회계와 대비되는 가치회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는 가치회계, 특히 가치평가분야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회계기준, 가치평가기준 및 감정평가기준은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갖고 상호 발전을 추동하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치평가는 국제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각국의 기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념, 원리 및 원칙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원칙(GAVP)은 거의 유사하다. 이들은 시장가치(미국에서는 정상시장가치, 거의 유사) 개념에 입각한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 대상 및 시점에 따라 가치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인정한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평가 방법론으로 소득접근법(Income Approach),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및 시장사례접근법(Market Approach)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치평가에 는 반드시 여러 방법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방법론이란 여러 접근법 정도가 아니라 각 접근법의 하위 기법들까지도 사용가능한 방법은 모두 사용한 후 가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은 처음부터 지식사회화되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기술 등의 무형의 지적자원을 측정 평가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기준의 특징은 평가대상에 따라, 즉 기술의 완성도나 활용단계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나 가치개념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아직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 집단이 클 경우는 이 집

단의 규칙이 사회적 규칙이 되지만 이 기준을 만든 집단은 아직은 사회적인 합의라 보기에는 미흡하다.

본고는 업계에서의 현행 업무내용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일반 연구자들에게서 회피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논의의 범주가 회계, 감정평가 및 가치평가로 넓은데다, 각 부분을 전 세계 차원과 미국 및 한국의 사례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일반 연구자들이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넓다는 특징도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에 의해 하나 하나에 대한 깊은 서술이 생략된다는 한계도 있다.

어떻든 이 연구에 의해 한국의 무형의 자원 자체에 대한 논의와 이의 평가에 대한 논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고, 무형자산 및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위원회(설성수 외),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 2000, 경문사.  
 기업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  
 \_\_\_\_\_,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Appraisal Foundation (2000), *Uniform Standards for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2000*.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www.accounting.rutgers.edu/raw/f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Summaries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http://www.accounting.rutgers.edu/raw/f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Summaries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www.iasc.org](http://www.iasc.org)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mmittee (2000,

- 2001),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2000*.
- 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 (2000), *NACVA Professional Standards 2000*.
- 김진호 (2000), "회계와 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협회 강의를록.
- 설성수 (2000가), "기술가치평가의 분석 틀", 『기술혁신학회지』, 3-1호, 1-15.
- \_\_\_\_\_ (2000나), "기술가치평가의 개념적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3-2호, 1-13.
- \_\_\_\_\_ (2001가),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의 철학과 구조", 『기술혁신학회지』, 4-2호, 182-197.
- \_\_\_\_\_ (2001나), "한국의 지식자산 가치평가제도", 기술혁신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대, 11.
- 설성수 외 (2002), 『업종별 기술가치평가기본모형 구축사업 보고서』, 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 근간.
- Aboudy, David and Baruch Lev, "The Value-Relevance of Intangibles; The Case of Software Capitaliz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99, 36(Supplement).
- Chambers, D., R. Jennings, R. Thompson II (1998), *Evidence on the Usefulness of Capitalization and Capitalizing and Development Amortiz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Texas.
- Deng, Zehn and Baruch Lev (1998), *The Valuation of Acquired R&D*, Working Paper, New York Univ..
- Eccles, Robert G., Robert H. Hertz, E. Mary Keegan, and David M. H. Phillips(2001), *The ValueReporting Revolution*, John Willey & Sons, Inc.
- (안경태 역(2001), 『기업가치공시혁명』, 한국경제신문.)
- Green et al.(2000), *Business Valuation - Principles, Theory and Technique*, 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
- H gh-Krohn, Nils E., K. Joachim (2000), "Accounting for Intangible Assets in Scandinavia, the UK, the US, and by the IASC: Challenges and a Solu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Vol.35, No.2, 243-265.
- Kaplan, Robert S., and David P. Norton (1994), "Putting the Balanced Scorecard to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134-147.
- Lev, Baruch (1997), "The Old Rules no Longer Apply", *Forbes ASAP*, April.
- Lev, Baruch (2001), *Intangibles: Management, Measurement, and Reporting*,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Lev, Baruch, P. Zarowin (1999), "The Boundari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How to Expand The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53-385.
- Lev, Baruch, T. Sougiannis (1996), "The Capitalization, Amortization, and Value-relevance of R&D",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1, 107-138.
- Lindsey, S. W., M. Z. Rutledge, and C. Wilson (1997), *Guide to GAAP*, 3rd. ed., Practitioners Publishing Company.
- OECD (1998), *Measuring Intangible Investment*, Paris.
- OECD (1999), *Measuring and Reporting Intellectual Capital: Experience, Issues, and Prospects*, Paris.
- Sveiby, Karl Erik(1998), *The New Organization Wealth: Managing and Measuring Knowledge-Based Assets*, Berrett-Koehler (Linda Michaels Limited), (정선종, 김용구 역(1999), 『지식경영성공을 위한 지식자산의 측정과 관리』, 미래경영개발연구원.)